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877

발의연월일: 2024. 7. 17.

발 의 자:주호영·권영세·이인선

윤상현 • 한기호 • 김용태

김승수 · 최은석 · 정희용

조지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각장애가 있는 선거인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점 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반드 시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시각장애 이외의 장애를 가진 선거인의 선거정보습득을 위한 제도는 충분히 마련되지 못하여 선거권이 평등하게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청각장애인의 경우 시각에 문제는 없으나 문맹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선거공보의 해석에 어려움이 따르며, 발달장애인 또한 문해력이 부족하여 선거공보를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시각장애 이외의 장애가 있는 선거인을 위하여 음성, 점자 또는 수화로 작성된 선거공보나 선거공약 등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된

선거공보 등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보조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5 조제4항 등).

법률 제 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4항 본문 중 "있다"를 "있으며, 시각장애 외의 장애가 있는 선거인을 위하여 음성, 점자 또는 수화로 작성된 선거공보나 선거공약 등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된 선거공보 등(이하 "장애인을 위한 선거공 보"라 한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로 한다.

제65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하며"를 "하고, 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내용을 선거공보에 포함하여야 하 며"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점자형 선거공보에"를 "점자형 선거공보 및 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에"로 한다.

제66조제8항 전단 중 "제65조제4항(단서는 제외한다)은"을 "제65조제4항 본문 중 점자형 선거공보에 관한 규정은"으로 한다.

제122조의2제3항제2호 중 "점자형 선거공보(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후보자가 제출하는 저장매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를 "점자형 선거공보(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후보자가 제출하는 저장매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의"로,

"점자형 선거공보 및"을 "점자형 선거공보와 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 및"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65조(선거공보) ① ~ ③ (현행 제65조(선거공보) ① ~ ③ (생 략) 과 같음) ④ 후보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거공보 외에 시각장애 선거인(선거인으로서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 된 시각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한 선거 공보(이하 "점자형 선거공보"라 한다) 1종을 제2항에 따른 책 자형 선거공보의 면수의 두 배 이내에서 작성할 수 있다. 다 -----있으며, 시각장애 외 만, 대통령선거 · 지역구국회의 의 장애가 있는 선거인을 위하 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여 음성, 점자 또는 수화로 작 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 성된 선거공보나 선거공약 등 공보를 작성 · 제출하여야 하되, 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된 선거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공보 등(이하 "장애인을 위한 음성 · 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선거공보"라 한다)을 중앙선거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 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 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⑧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 (8) -----

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 공보를 포함한다)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 음 각 호에 따른 내용(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정보공개자료" 라 한다)을 그 둘째 면에 게재 하여야 하며, 후보자정보공개자 료에 대하여 소명이 필요한 사 항은 그 소명자료를 함께 게재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둘째 면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와 그 소명자료만을 게재하여야 하며, 점자형 선거공보에 게재 하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내 용은 책자형 선거공보에 게재 하는 내용과 똑같아야 한다.

- 1. ~ 5. (생략)
- ⑨ ~ ⑭ (생 략)
- 제66조(선거공약서) ① ~ ⑦ (생 략)
 - 8 제64조제3항·제8항 및 제6 5조제4항(단서는 제외한다)은

하고, 장애인을 위한 선거
공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중
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후보자정보공
개자료의 내용을 선거공보에
포함하여야 하며
점자형 선거공보 및 장
애인을 위한 선거공보에
1. ~ 5. (현행과 같음)

- (9) ~ (14) (현행과 같음)

제66조(선거공약서) ① ~ ⑦ (현 행과 같음)

5조제4항 본문 중 점자형 선거 선거공약서에 관하여 각각 이 | 공보에 관한 규정은-----

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벽보" 또는 "책자형 선거공보"는 "선거공약서"로, "작성하여 보관 또는 제출할"은 "작성할"로, "점자형 선거공보"는 "점자형 선거공약서"로 보며, 점자형 선거공약서는 선거공약서와 같은 종류로 본다.

⑨ (생략)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7

- ① · ② (생 략)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費用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候補者를 위하여부담한다. 이 경우 제3호의2 및 제5호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 1. (생략)
- 2. 제65조에 따른 점자형 선거 공보(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후보자가 제출하는 저장매체 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작성비용과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 및 같은 조 제9항의 후보자정보 공개자료를 포함한다) 및 전

<u>.</u>
⑨ (현행과 같음)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1. (현행과 같음)
2 <u>점자형 선거</u>
공보(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후보자가 제출하는 저장매체

2. -----점자형 선거 공보(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후보자가 제출하는 저장매체 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장애인을 위한 선거 공보의-----점자형 선거공 보와 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 및------

단형 선거공보의 발송비용과	
우편요금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